

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5. 8. 29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572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8. 14. 강남구청장(장애인복지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9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이용달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(2025. 12. 31.字)에 따라,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.
-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-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

-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
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낮 시간동안 일상생활지원부터 교육재활, 여가문화, 가족지원사업 등 전문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에 특화되고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.

- 운영·관리상의 효율성 제고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사업수혜자 특성,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○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
-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
-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지원시설
해마을주간보호센터	개포로617-8	지상1층 (136.76㎡)	프로그램실, 사무실, 상담실 및 휴게실, 주방

○ 민간위탁 기간 : 5년 (2026. 1. 1. ~ 2030. 12. 31.)

- 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○ 소요예산 : 307,391,410원

○ 산출내역

구		분	금 액(원)	구성비(%)	산 출 근 거	
지출원가	① 인건비	기본급	197,062,000	55.5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	
		제수당	시간외근무수당	16,928,490	4.8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	관리자수당	2,400,000	0.7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당	가족수당	1,080,000	0.3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	정액급식비	7,800,000	2.2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	상여금(명절휴가비)	19,640,400	5.5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일용잡금(대체인력)	471,160	0.1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비지원기준	
		기타후생경비(복지포인트)	1,800,000	0.5	-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 지급기준	
	노무비	퇴직충당금	20,409,220	5.7	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	
		보험료	국민건강보험료	8,682,090	2.4	- 사회보험요율
			국민연금보험료	11,020,990	3.1	- 사회보험요율
			고용보험료	2,816,470	0.9	- 사회보험요율
			산재보험료	1,469,460	0.4	- 사회보험요율
			장기요양보험	1,124,330	0.3	- 사회보험요율
	소 계	292,704,610	82.4			
	② 운영비	여비(국내/국외)	100,000	0.0	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	
		교육훈련비	1,250,000	0.4		
		우편통신비	757,000	0.2		
		소모품비	1,694,800	0.5		
수선유지비		1,160,000	0.3			
차량유지비		400,000	0.1			
공공요금 및 제세		6,805,000	1.9			
기타		6,440,000	1.8			
소 계	18,606,800	5.2				
③ 사업비	44,080,000	12.4	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			
지출원가 합계(A=①+②+③)			355,391,410	100.0		
수입원가	④ 입장료·이용료	38,400,000	80.0	- 사업수입 대비 100% 집행		
	⑤ 사용료	0	0	-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무상 사용		
	⑥ 기타수입	9,600,000	20.0	- 사업수입 대비 100% 집행		
수입원가 합계(B=④+⑤+⑥)			48,000,000	100.0		
위탁비용(A-B)			307,391,410	-		

다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I. 동의안 제출 배경

- 본 동의안은 2025. 12. 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해마을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르면,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한다)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)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

규정하고 있는데,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,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(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·운영)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“적정”으로 제출됨.

- 다만, 제출된 동의안 1쪽 추진근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조 번호와 조 제목이 일부 오표기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제출 안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II. 주요 사항의 검토

-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3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,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▶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, ▶해마을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, ▶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5년(2026. 1. 1. ~ 2030. 12. 31)로 제출되었음.
 -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,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부분 또한 관계 법령을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성과평가)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.
 - 해마을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5. 3. 19.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89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‘적정’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.

III. 종합의견

-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

중증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교육재활, 여가문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, 기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인바,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, 공공성,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

- 다만, 해마을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003년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현 운영법인이 9차례에 걸쳐 장기간 위탁 운영 중인데, 특정 단체의 장기위탁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,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자칫 관행적 운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. 이에 본 동의안 가결 후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설운영 능력과 역량, 전문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,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. 끝.

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4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장애인복지과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내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(2025. 12. 31.字)에 따라,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○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

-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
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낮 시간동안 일상생활지원부터 교육재활, 여가문화, 가족지원사업 등 전문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에 특화되고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.

- 운영·관리상의 효율성 제고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사업수혜자 특성,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
-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
-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지원시설
해마을주간보호센터	개포로617-8	지상1층 (136.76㎡)	프로그램실, 사무실, 상담실 및 휴게실, 주방

○ 위 치 도



사진설명	해마을주간보호센터 외부 전경
사진설명	해마을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

지역여건

- 개포3동의 강남구가족센터 내에 위치
-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인접
- 주변에 강남장애인복지관, 강남종합사회복지관, 하상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인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
- 인근에 대진공원, 마루공원, 일원에코파크, 양재천 등이 있어 외부활동 용이

마. 민간위탁 기간 : 5년 (2026. 1. 1. ~ 2030. 12. 31.)

○ 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07,391,410원

○ 산출내역

구		분	금 액(원)	구성비(%)	산 출 근 거
지출원가	① 인건비	기본급	197,062,000	55.5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시간외근무수당	16,928,490	4.8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관리자수당	2,400,000	0.7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가족수당	1,080,000	0.3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정액급식비	7,800,000	2.2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상여금(명절휴가비)	19,640,400	5.5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		일용잡금(대체인력)	471,160	0.1	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비지원기준
		기타후생경비(복지포인트)	1,800,000	0.5	-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 지급기준
		퇴직충당금	20,409,220	5.7	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
		국민건강보험료	8,682,090	2.4	- 사회보험요율
	보험료	국민연금보험료	11,020,990	3.1	- 사회보험요율
		고용보험료	2,816,470	0.9	- 사회보험요율
		산재보험료	1,469,460	0.4	- 사회보험요율
		장기요양보험	1,124,330	0.3	- 사회보험요율
		소 계	292,704,610	82.4	
	② 운영비	여비(국내/국외)	100,000	0.0	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
		교육훈련비	1,250,000	0.4	
		우편통신비	757,000	0.2	
		소모품비	1,694,800	0.5	
		수선유지비	1,160,000	0.3	
차량유지비		400,000	0.1		
공공요금 및 제세		6,805,000	1.9		
기타		6,440,000	1.8		
소 계	18,606,800	5.2			
③ 사업비		44,080,000	12.4	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	
지출원가 합계(A=①+②+③)		355,391,410	100.0		
수입원가	④ 입장료·이용료	38,400,000	80.0	- 사업수입 대비 100% 집행	
	⑤ 사용료	0	0	-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무상 사용	
	⑥ 기타수입	9,600,000	20.0	- 사업수입 대비 100% 집행	
수입원가 합계(B=④+⑤+⑥)		48,000,000	100.0		
위탁비용(A-B)		307,391,410	-	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 이라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 라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